

제2023-042호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행복**으로 **꽃피는** 학교

담당자 : 김 철



정 교 교 육 통 신

- 교육목표 -
도덕인, 자주인
창의인, 건강인

11167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77

☎ 교무실:543-3602

행정실:542-1231

FAX:542-3604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정교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하고 학교에 즐겁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헬멧 미착용,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사고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

특히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1.5.13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래로 단순 레저용 기구가 아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사고의 많은 비율이 무면허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과태료-10만원)
- 무면허 및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무면허-범칙금 10만원, 2인이상-범칙금 4만원)
- 안전모(헬멧) 등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교통신호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해 통행(*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 면허 미소지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자가 소유 및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 면허 소지 학생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 운행 및 이용 완료 후 반드시 거치대로 반납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2021.5.13.부터 원동기 면허(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16세가 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2023. 4. 3.

정 교 초 등 학 교 장

Personal Mobility
PM(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이것만은 알고 타기로 해요!



PM 안전 약속! 꼭! 지키기로 해요!

- 인명보호장구 착용
- 음주운전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 동승자 탑승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으로 통행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2021년 5월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요!

▶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

-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 후방안전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



경기북부경찰청